



제316회 정례회

2012.11.28.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2년 11월 2일

○ 회부일자 : 2012년 11월 7일

3. 제안이유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3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취득

(단위 : m<sup>2</sup>, 천원)

기관명	구분	사 업 명	수 량	금 액
충청북도교육청	토지	가칭)울량2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14,556	3,474,279
	건물	가칭)울량2초등학교 교사 신축	12,176	5,059,860
	건물	명지초등학교 교사 신축	11,161	3,386,000
	건물	가칭)석장초등학교 교사 신축(금액증액)	0	9,921,000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충청북도교육청	토지	가칭)울량2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14,400	3,437,044
	건물	가칭)울량2중학교 교사 신축	10,424	3,789,478
	토지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39,259	1,000,000
청주교육지원청	건물	주중초 유치원 및 교실 증축	2,460	5,216,905
충주교육지원청	건물	가칭)삼원유치원사 신축	1,782	2,929,000
	토지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5,338	2,200,000
	건물	가칭)예성유치원사 신축	1,782	2,929,000
제천교육지원청	토지	가칭)의림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3,738	1,969,926
	건물	가칭)의림유치원사 신축	2,078	3,788,000
영동교육지원청	건물	가칭)영동유치원사 신축	2,985	4,184,000
합 계		(14건)	122,139	53,284,429

### ① 가칭)울량2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 설립위치 : 청주시 울량동 363-3번지 일원
- 매입부지 : 14,556㎡
- 신축면적 : 12,176㎡
- 취득금액 : 8,534,139천원(부지 3,474,279천원, 건물 5,059,860천원)
- 사유 : 청주시 울량2 택지개발지구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 ② 명지초등학교 교사 신축

- 신축위치 : 제천시 명지동 46번지
- 신축면적 : 11,161㎡
- 취득금액 : 3,386,000천원
- 사유 : 제천시 강저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 신축

**③ 가칭) 석장초등학교 교사 신축(취득금액 변경)**

- 신축위치 :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01번지 일원
- 신축면적 : (9,498m<sup>2</sup>)
- 증감금액 : 9,921,000천원
- 예산현황
  - 2013. 본 예산 : 9,921,000천원
  - 2011. 제1회 추경 : 4,379,000천원, 합계 14,300,000천원
- 당초 관리계획의결 : 2011. 5. 13.(면적 9,498m<sup>2</sup>, 금액 4,379,000천원)
- 사 유 :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교사 신축

**④ 가칭)울량2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 설립위치 : 청주시 울량동 산 53-1번지 일원
- 매입부지 : 14,400m<sup>2</sup>
- 신축면적 : 10,424m<sup>2</sup>
- 취득금액 : 7,226,522천원(부지 3,437,044천원, 건물 3,789,478천원)
- 사 유 : 청주시 울량2 택지개발지구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⑤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 이전위치 :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154-1번지 외 19필지
- 매입부지 : 39,259m<sup>2</sup>
- 취득금액 : 1,000,000천원
- 사 유 : 현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의 오창-옥산간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이전부지 취득

**⑥ 주중초등학교 교사 증축**

- 증축위치 : 청주시 주중동 산96-4번지 외 1필지
- 증축면적 : 2,460m<sup>2</sup>
- 취득금액 : 5,216,905천원
- 예산현황
  - 2013. 본 예산 : 4,983,905천원
  - 2012. 제1회 추경 : 233,000천원

- 사 유 : 2013~2014년도 청주시 율량 2지구 입주로 2013년 407명, 2014년 568명 등 총 975명의 학생 유입예정에 따라 초등학교 15실, 병설유치원 4.5실 교실 증축

**7 가칭)삼원유치원사 신축**

- 설립위치 :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
- 신축면적 : 1,782㎡ / 112명 수용
- 신축금액 : 2,929,000천원
- 사 유 : 삼원초 및 남한강초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사 신축

**8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 설립위치 : 충주시 안림동 499-1 외 1필지
- 매입부지 : 5,338㎡
- 신축면적 : 1,782㎡ / 112명 수용
- 취득금액 : 5,129,000천원(토지 2,200,000천원, 건물 2,929,000천원)
- 사 유 : 예성초 및 중앙초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9 가칭)의림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 설립위치 : 제천시 하소동 194-1번지 외 4필지
- 매입부지 : 3,738㎡
- 신축면적 : 2,078㎡ / 128명
- 취득금액 : 5,757,926천원(토지 1,969,926천원 건물 3,788,000천원)
- 사 유 : 의림초 및 동명초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10 가칭)영동유치원사 신축**

- 신축위치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5번지 외 2필지
- 신축면적 : 2,985㎡ / 190명 수용
- 신축금액 : 4,184,000천원
- 사 유 : 영동초, 이수초, 부용초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사 신축

##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 내 중앙초와 주성중을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것이고, 누리과정 도입 등 최근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며, 도심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학급수 증가로 명지초의 교사를 신축하고,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계획안은 인근 옥동초의 학생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어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것이며, 기존의 청주농고의 통합목장이 고속도로에 편입에 따라 이전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별로 살펴보면, **“가칭)율량2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은 청주시 율량2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설립부지 3,474,279천원과 건물 5,059,860천원으로 교사를 신축하는 사업임.
- **“명지초등학교 교사 신축”**은 제천시 강저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3,386,000천원으로 교사를 신축하는 사업임.
- **“가칭)석장초등학교 교사 신축”**은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2011. 5. 13.)에서 건물 4,379,000천원을 의결하였으나, 9,921,000천원을 증액하여 14,300,000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2011년 제1회 추경 편성액: 43억 7,900만원(건물)
- **“가칭)율량2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은 청주시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설립부지 토지 취득 3,437,044천원과 건물 3,789,478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은 현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의 오창-옥산간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이전을 위해 토지 1,000,000천원으로 부지를 취득하는 사업임.

- “주중초등학교 교사 증축”은 청주시 율량 2지구 입주로 2013년 407명, 2014년 568명 등 총 975명의 학생 유입예정에 따라 병설유치원 4.5실, 초등학교 15실 증축을 위해 건물 5,216,905천원을 증액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2012년 제1회 추경 편성액: 2억 3,300만원(건물)

- “가칭)삼원유치원사 신축”은 삼원초 및 남한강초병설유치원의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사 신축에 건물 2,929,000천원으로 원사를 신축하는 사업임.

-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은 예성초 및 중앙초병설유치원의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 취득으로 토지 2,200,000천원과 신축에 건물 2,929,000천원으로 원사를 신축하는 사업임.

- “가칭)의림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은 의림초 및 동명초병설유치원의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 취득으로 토지 1,969,926천원과 신축에 건물 3,788,000천원으로 원사를 신축하는 사업임.

- “가칭)영동유치원사 신축”은 영동초, 이수초, 부용초병설유치원의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사 신축에 건물 3,788,000천원으로 원사를 신축하는 것임.

- 위의 사업들은 입주예정과 지역 학생(원아) 수용을 위한 교사 및 원아 신축은 꼭 필요한 것으로 설립부지와 건물의 취득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위 사업 중 학교설립계획안 및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의결은 해당안건들의 의결결과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임.

## 관 계 법 령 발 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